



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 - 279호

계량에관한법률 제6조,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체온계 기술기준(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)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3. 12. 31.

기술표준원장

### 체온계 기술기준 개정 예고

#### 1. 개정취지

국내 법정계량기인 체온계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(OIML)에서 권고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체온계의 품질향상 및 무역상기술장벽 해소에 의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체온계 기술기준 개정(안) : 별첨(관보게재시 생략)

- 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

※ 체온계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(안)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([www.ats.go.kr](http://www.ats.go.kr))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계량계측과에서 열람가능.

나. 체온계 기술기준 개정(안) 인용규격



- OIML R 7 Clinical thermometers, mercury-in-glass with maximum device
- OIML R 114 Clinical electrical thermometers for continuous measurement
- OIML R 115 Clinical electrical thermometers with maximum device

#### 다. 부칙

##### 가) 시행일

- 체온계 검정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.
- 체온계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# 나) 경과조치

-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
-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준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

### 3. 의견제출

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04. 2. 28(토)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
다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라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
마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적합성부 계량계측과(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) 509-7409/7410, Fax 02) 507-687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 - 278호

계량에관한법률 제6조,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체온계 기술기준(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)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3. 12. 31.

기술표준원장

## 혈압계 기술기준 개정 예고

### 1. 개정취지

국내 법정계량기인 혈압계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(OIML)에서 권고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혈압계의 품질향상 및 무역상기술장벽 해소에 의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혈압계 기술기준 개정(안) : 별첨(관보게재시 생략)

- 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

※ 혈압계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(안)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([www.ats.go.kr](http://www.ats.go.kr))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계량계측과에서 열람가능.

나. 혈압계 기술기준 개정(안) 인용규격



- OIML R 16-1 Mechanical non-invasive sphygmomanometers
- OIML R 16-2 Automated non-invasive sphygmomanometers

다. 부칙

가) 시행일

- 혈압계 검정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.
- 혈압계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나) 경과조치

-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
-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준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

### 3. 의견제출

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불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04. 2. 28(토)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
다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라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
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적합성부 계량계측과(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) 509-7409/7410, Fax 02) 507-687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 - 1652호

##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개정

계량에관한법률 제6조, 제12조 및 제17조, 같은법 시행령 제1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비자동저울 기술기준(형식인증기준, 검정기준 및 정기검사기준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03. 12. 24.

기술표준원장

- 다 음 -

### 1. 적용대상

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자동저울

### 2.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: 붙임(관보게재시 내용 생략)

2.1 제1장 비자동저울의 형식인증기준

2.2 제2장 비자동저울 검정기준

### 3. 부칙

#### 3.1 시행일

3.1.1 비자동저울 검정기준 및 정기검사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단,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은 본 기준에 의한 검정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3.1.2 비자동저울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3.2 경과조치

3.2.1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 및 정기검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

3.2.2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준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



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 - 277호

계량에관한법률 제6조,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연료유미터 기술기준(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)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3. 12. 31.

기술표준원장

## 연료유미터 기술기준 개정 예고

### 1. 개정취지

국내 법정계량기인 연료유미터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(OIML)에서 권고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연료유미터의 품질향상 및 무역상기술장벽 해소에 의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연료유미터 기술기준 개정(안) : 별첨(관보게재시 생략)

- 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

※ 연료유미터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(안)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([www.ats.go.kr](http://www.ats.go.kr))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계량계측과에서 열람가능.

나. 연료유미터 기술기준 개정(안) 인용규격



- OIML R 117 Measuring systems for liquids other than water  
(물 이외의 액체용 측정기구)
- OIML R 118 Testing procedures and test report format for pattern examination of fuel dispensers for motor vehicles  
(자동차용 연료주유기 형식 평가 시험절차 및 시험보고서 형식)

다. 부칙

가) 시행일

- 연료유미터 검정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.
- 연료유미터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나) 경과조치

-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
-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준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

3. 의견제출

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04. 2. 28(토)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
다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라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
마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적합성부 계량계측과(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) 509-7409/7410, Fax 02) 507-687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전기용품 안전관리 최근 정보

### 1. 제정 취지

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(산업자원부령 제211호, 2003.10.13)됨에 따라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정하여 중소기업체의 비용부담 경감 및 전기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한 것임

### 2. 주요 제정 내용

- 제1조 : 목적
  -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정함
- 제2조 : 세부안전적용기준
  - 11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안전적용기준을 정함
- 제3조 : 세부범위
  -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범위를 정함
- 시행일 : 2004. 1. 8

### 3. 자료 입수 방법

- 구체적인 정보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(<http://www.ats.go.kr>) 방문하여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
  - 제정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품안전과(02-507-74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 - 10호

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 [별표1]에 의거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한다.

2004년 1월 8일

기술표준원장

###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(이하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조 [별표1]에서 규정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부안전적용기준) 규칙 제2조 [별표1]의 1호에서 규정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의 세부안전적용기준은 [첨부1]에 따른다.

제3조(세부범위) 규칙 제2조 [별표1]의 1호에서 규정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범위는 [첨부2]에 따른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이 신청되어 진행중인 것은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.